

과학기술인 **PLUS** 으뜸적금 & 청년우대 FAQ

(과학기술인공제회, 2022.04. update)

Q1. 공제회원입니다.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을 가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공제 >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 가입신청안내](#)' 페이지에서 **가입신청(공제회원)** 버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 으뜸적금 > 신청 > 가입신청](#)'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 가입신청 시 가입금액, 가입기간, 비과세여부, 우대혜택 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Q2. 재직 중인 회사가 공제회와 가입협약을 맺지 않아 그동안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공제회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자격에 해당하지만 소속회사가 공제회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속회사의 급여공제 및 회원관리가 필수적인 퇴직연금이나 적립형공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 대신 일반회원 자격^{주1)}으로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 으뜸적금은 가입기간이 1년, 2년, 3년, 5년으로 정해진 정기적금 상품이며, 과학기술인 으뜸적금만 가입하셔도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되시며, 회원으로써 공제회 복지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1) 일반회원 가입자격 대상(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및 정관 제4조)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
-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
-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
-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임직원
-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임직원
-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임직원
- ◆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등의 임직원

* 비영리법인과 행정기관은 회원자격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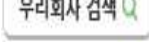
**Q3. 비회원입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입대상인 비회원이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희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통해 공제회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을 위해 직접가입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접가입 전용 : <http://direct.sema.or.kr>


☞ 직접가입 전용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대상임이 확인되면 가입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http://direct.sema.or.kr> 접속

② 가입대상 여부 확인 : 가입대상 안내의  을 통해 근무회사 검색

③ 온라인 가입신청 : 화면 하단의  선택

☞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협약 유무 등에 따라 가입구분을 ‘회원기관 재직자’ 혹은 ‘미협약기관 재직자’, ‘기술사회 회원’ 중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초로 가입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직접가입 전용사이트가 아닌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에는 ‘[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가입신청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4. 공제회 가입대상 기업 재직자 자격으로 홈페이지에서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 신청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검색이 안 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자격^{Q2_주1)}에 해당하거나 기술사회 회원인 경우에만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는 가입자격 검증을 위해 매월 대상회사의 리스트를 관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아 데이터 베이스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자님의 직장이 검색이 안 되신다면, 재직 중이신 회사가 가입자격 대상이 아닐 경우 이거나, 최근에 자격을 취득하여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공제회 대표전화(1577-0789(내선 3))로 연락하셔서 재직기관 및 회원자격을 말씀해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5. 공제회에 처음 가입신청을 하는데 회원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 ☞ 업무협약을 기반으로한 적립형공제 및 퇴직연금의 경우 소속기관의 공제업무담당자가 가입신청자의 재직여부를 검증함에 따라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으나, 회원과 공제회간 직접 가입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학기술인인품적금’의 경우에는 가입신청 시에 신청자 본인의 자격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회가 이를 확인하여 가입신청을 승인합니다.
- ☞ 이때, 증빙서류로 가입대상기관 재직자의 경우는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를 파일첨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의 경우 최근 위조사례가 발생하여 증빙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단,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재직 증빙서류 이외에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확인을 위해 근무부서가 포함된 서류(ex.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필요
- ☞ 기술사회회원은 한국기술사회회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자동check되며, 그 외 기술사회 회원은 해당기술사회를 통해 회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원자격 별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원자격 별 제출서류

회원자격	증빙내용	제출서류	발급방법
기술사회 회원	회원여부	①(한국기술사회 회원) 온라인check ②(그외기술사회회원) 회원증명서	①자료제출 생략 ②해당기술사회를통해개별발급
가입자격 대상기관 재직자	재직여부	①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4대보험 가입확인서 ③국민연금가입증명서 ④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① minwon.nhis.or.kr 로그인 → 개인/조회 및 발급 → 자주 찾는 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② www.4insure.or.kr 로그인 → 증명서발급 → 증명서신청/발급 → 신청 ③ www.nps.or.kr 로그인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증명서등발급 → 가입증명서발급 ④ total.kcomwel.or.kr 로그인 → 개인 → 증명원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
퇴직과학기술인	경력여부	①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②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중택1	① minwon.nhis.or.kr 로그인 → 개인/조회 및 발급 → 자주 찾는 민원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② total.kcomwel.or.kr 로그인 → 개인 → 증명원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

* 가입신청서 기재내역과 제출한 증빙자료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신청 건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6.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5천만원 한도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 15237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별법인인 공제회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공제회는 회원자산을 안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 정관에 사업결손금의 보전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수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결손금은 자본금(회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출연금 등)으로 보존되며,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필요할 경우 보조금 출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제회법 제17조)
- ☞ 이러한 회원자산의 보호방식은 과학기술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먼저 설립되어 운영 중인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회들의 공통 적용 사항입니다 .
-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대상기관으로 국회 및 정부로부터 운영에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결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을 받는 등 회원의 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공제회법 제19조, 제21조의2)
- ☞ 경영정보공시 : 공제회 홈페이지(<http://www.sema.or.kr>)
 'about SEMA > 경영정보 > [주요사업현황](#) / [재무현황](#) / [자산운용](#) / [기타공시](#)'

Q7. 청년우대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이며 가입대상과 가입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 공제회는 청년과학기술인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학기술인에게 0.3%p의 우대금리 혜택을 한시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 ☞ '(가칭)청년과학기술인적금'으로 불리우는 이 혜택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장 5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회 한정으로 23년 4월 20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청년우대

(2022.4.1. 기준)

구분	1년	2년	3년	5년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금리	3.0%	3.2%	3.4%	
청년과학기술인 우대금리(+0.3%p)	3.3%	3.5%	3.7%	

Q8. 청년우대의 가입조건이 만 39세 이하라고 하는데 가입시점에는 해당하지만 만기 전에 40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입기간 중간에 우대이율 혜택이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청년우대 가입조건은 '가입을 신청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신청 시 청년우대의 가입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우대이율은 만기까지 쪽 유지 가능합니다.

Q9.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을 가입하고 싶은데, 기존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가입되어 있어 한도가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의 가입금액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총 가입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도가 부족하여 청년우대 상품 가입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하시던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월납입액을 감좌하신 후 가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납입액 변경이 불가능한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기가입건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지급을 받으신 후 새로 생긴 한도범위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후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 패널티가 적용이 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0.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만기전에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 만기 도래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급여지급청구를 통하여 중도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진행하실 경우 납입하신 원금은 100% 지급되나, 이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해지지급률^{주1)}을 적용받아 일부만 지급됩니다.

(주1) 목돈급여 중도해지지급률

구분	~90일 미만	90일~180일 미만	180일~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해지지급률	이자의 50%	이자의 60%	이자의 70%	이자의 80%	이자의 90%

Q11. 청년우대로 가입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 하였습니다.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과학기술인적금은 1인 1회, 1건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기에 때문에 중도해지 후에는 '청년우대금리' 혜택을 통한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일반이율을 적용받아 가입이 가능합니다.

Q12. 가입신청을 했는데 최초납입일이 익월 1일이 아니라 그 다음달 1일로 설정되어있네요. 가입신청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바로 반영이 안 되나요?

- ☞ 매월 가입신청이 정기출금일(매월1일) 5영업일 전(매월 23일 전후)에 마감됩니다.
- ☞ 따라서, 마감 후에 신청하신 분들의 첫 번째 출금은 차익월 정기출금일(매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매월 정기출금에 앞서 인출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등록 및 출금요청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융정보관리를 위한 절차이므로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Q13. 잔고부족으로 출금이 안됐습니다. 미납분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매월 1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정기출금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공제회는 다음 3영업일에 2차로 출금 시도를 합니다. 2차출금에도 출금이 안 되면 해당월은 최종 미납 처리되며 개별납입이나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 만약,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미납인 경우에는 최종 납입중지 및 자동중도해지가 됨에 따라 그동안 납부하신 부담금은 급여지급청구를 통해 수령하셔야합니다.
- ☞ 가입신청 후 최초 부담금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 가입신청이 반려됩니다.

Q14. 다음 달이면 만기가 됩니다.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통해 모은 목돈을 이제 잘 굴리고 싶은데 공제회 상품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 ☞ 공제회는 정기에금으로 목돈굴리기 상품인 목돈급여(일시금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목돈급여\(일시금\) 상품안내\("22.4.1 기준\)](#)

- ☞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만기 시에는 가입 당시 지정하셨던 만기수령계좌로 세후 원리금이 지급됩니다.
- ☞ 만기수령액을 목돈급여(일시금형)로 바로 예치하고자 하는 회원을 위해 공제회는 '만기지급 -> 가입신청 -> 목돈예치' 과정을 생략하여 바로 재예치하실 수 있게 재예치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세후 만기수령액이 일시금형 최소가입금액(3백만원, 연금지급형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만기지급일 한 달 전부터 만기지급 4영업일 오후 4시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회 홈페이지 '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재예치가입안내' 참고
- ☞ 비회원이었다가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통해 처음 공제회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재예치를 통해서만 목돈급여(일시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수령액을 지급받으신 후 새로 목돈급여(일시금)에 가입신청하시면 가입자격 비해당으로 가입이 불가능 하오니 꼭! 만기수령 전 재예치를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Q15. 과학기술인으뜸적금 가입을 위한 비회원 온라인 가입신청 단계에서 제 직장을 검색했더니 같은 회사명으로 두 건이 검색됩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까요?

- ☞ 한 회사가 여러 개의 회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대상 회사 검색 시 복수로 검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 소속만 가입대상이니 실제로 부설연구소에 소속되어 근무하시는 경우에만 해당 연구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16. 일반회원 가입자격으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처음으로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추가로 하나 더 가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 추가 가입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회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신청 > 가입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 다만, 비회원이 일반회원 가입자격으로 과학기술인으뜸적금에 처음 가입신청을 하고 첫 정기수납일이 도래하지 않아 최초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불가능함으로 첫 부담금이 납부되고 회원가입이 최종 완료된 이후에 추가 가입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소속회사가 공제회 일반회원 가입대상 자격이 되어 과학기술인으뜸적금 3년만기 상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번에 해당 회사에서 퇴직하여 다른 회사로 이직 하되 되었는데 가입 중인 으뜸적금은 탈퇴되나요?

-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직접가입을 통해 공제회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에도 계속 재직 여부와 상관 없이 으뜸적금 가입기간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 다만, 으뜸적금을 추가로 가입신청하거나, 만기 후 다시 가입하고자 하실 때에는 다시 가입신청 하는 시점에 공제회 가입대상임을 다시 증빙하여 주셔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옮기시는 회사가 공제회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기존 가입건은 유지되지만 추가 가입은 어려우십니다.

Q18. 가입 후 납입금액 혹은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 ☞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경우 가입하신 후 월납입금액과 출금계좌를 자유로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월납입액의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증·감좌 신청](#)' 메뉴에서 정기출금일 5영업일전까지 증·감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재신청 기간제한이 없어 매달 납입액을 변경하시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 ☞ 출금계좌 변경의 경우에는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MY공제 > 과학기술인으뜸적금 > 수령/출금계좌 변경신청](#)' 메뉴를 통하여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출금계좌 변경 역시 정기출금일 5영업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 증서를 가입하고 계시는 경우 변경을 원하는 계좌를 모두 선택하시어 일괄 변경도 가능합니다.
- ☞ 가입 신청 후 첫 부담금을 납입하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가입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납입금액, 납입계좌를 직접 변경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가입신청 건을 취소한 후 재신청하셔야하기 때문에 공제회로 유선연락을 주시어 요청해주시면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1577-0789(내선 3))